

01 주인 - 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능률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② (×)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 발생한다.

답 ②

▣ 「주인 - 대리인이론(Principal - Agency Theory) - 도널드슨(L. Donaldson), 페로우(C. Perrow)

- ① **의의** : 본인과 대리인 간 비대칭적 정보와 상충적 이해관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주인에게 대리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론.(주인-대리인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이 조직경제학이다)
- ② **계약관계** : 대리인(agent ; 근로자, 판매자)과 본인(principals ; 소유자, 구매자) 간 관계를 **상반된 이해관계를 토대로 하는 '계약관계'**로 파악(국민과 정부, 유권자와 의원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대리관계).
 - ㉠ 본인(주인) ⇨ 대리인을 포함하여 조직을 가장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투자수익의 극대화 추구
 - ㉡ 대리인 ⇨ 노력의 최소화와 보수의 최대화 추구
- ③ **대리손실(agency loss)의 발생** : 정보의 비대칭성(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과 본인과 대리인 간 이해상충,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d choice) 발생.
 - ㉠ **역선택**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보수를 주는 계약을 체결.
 - ㉡ **도덕적 해이** :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감시·통제하기 곤란하므로, 대리인이 무성의하거나 수준 이하의 노력을 하는 현상
- ④ **합리적 선택과 주인의 통제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
 - ㉠ **합리성의 제약** : 인간의 인지적 한계, 정보 부족 때문에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곤란함.
 - ㉡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태** : 대리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본인(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며(정보의 불균형성·비대칭성), 위임자(주인)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이기적 대리인은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리손실(위임자의 역선택,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발생.
 - ㉢ **자산의 특정성(전속성 specificity) :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고정적·특정적이면 조직 내의 관계나 외부공급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되고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개선하기 곤란함.**
 - ㉣ **소수 독점이나 과점** :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잠재적 당사자(대리인)의 수가 적으면 불리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짐.
- ⑤ **대리손실의 극소화** : 효율적인 계약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리손실의 최소화'가 필요.

▣ 대리손실 방지 방안

- ㉠ **정보의 균형화(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정보 확대)** : 대리인이 주인에게 정보를 제공 **예**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의 공표제, 내부고발자보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표제, 공청회, 품질인증제(KS · ISO인증), 원산지표시 의무화, 유통기한표시제 등
- ㉡ **효과적인 감시·통제** :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거나 대리인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계약관계를 파기 **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예산불법지출감시
- ㉢ **인센티브 부여(유인 제공)** :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행되도록 유인을 제공 **예**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상여금, 예산성과금, 공무원제안제도, 효율임금(업계평균보다 높음 임금) 지급
 - **유인체계**
 - ㉠ 위임자와 대리인의 목표갈등이 적고 업무가 일상화되고 업무수행결과의 측정 곤란 ⇨ **시간급을 규정하는 행태지향적 계약** 적합
 - ㉡ 위임자와 대리인의 목표갈등이 크고 직무행태 감시가 어렵고 업무수행결과의 측정 용이 ⇨ **성과급을 규정하는 결과지향적 계약** 적합
- ㉣ **복수의 차별화된 계약체결** :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공하여 대리인이 선택하게 함
- ㉤ **대리인의 명성에 의존** : 대리인의 능력과 업무성과에 대한 명성 또는 평판에 의존하여 대리인을 선정
- ㉥ **복수대리인 선정·경쟁** : 복수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상호 통제 및 경쟁하도록 함
- ㉦ **기타** :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시장적 통제, 감시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제도 등

⑥ **대리인이론에 대한 평가**

- ㉠ **장점** : 조직 내부 관리문제뿐 아니라 정부기능의 민영화,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관계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함.
- ㉡ **단점** : ㉠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음**(청지기 이론은 이타적 인간을 가정)
 - ㉢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
 - ㉣ **공공부문은 위임자가 누구인지, 다수의 위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민간부문에 비해 적용 곤란**

02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② 정책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 ④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① (○) **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 ; evaluability assessment ; 예비평가)** : 본격적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유용성(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에 대비한 평가.) 평가결과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이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확인(평가의 목적, 유용성), 어떤 사업 또는 사업의 어떤 부분이 평가가능한지를 검토(실행가능성)하여 평가대상 확정, 평가결과 생성되는 정보·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
- ② (○) **영향평가** : 정책이 집행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정책산출(output)·정책결과(outcome)·정책영향(impact) 중 의도한 정책효과(effect)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판단 → 정책집행 완료 후 정책실시 전·후 비교(효과평가·산출평가·영향평가).
- ③ (○), ④ (×)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총괄평가다.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의 일종으로 집행 도중에 이뤄진다.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구분	총괄평가	과정평가
의의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적절하게 달성했는지 평가(정책효과의 평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 지 확인, 정책수단에서 최종 목표까지 연계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평가
평가자	정책프로그램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외부평가자에 의해 수행됨.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주로 내부평가자와 외부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정책프로그램의 지속·중단·확대 등 정책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됨	평가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됨

형성평가 : 정책집행 도중에 원래의 집행계획(plan)이나 집행설계(design)에 따라 의도한 대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점검

집행모니터링(프로그램모니터링) (program or activity monitoring)	= 행정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과 활동들이 프로그램(집행)계획에 따라 원래 의도한 대로 충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 정확성 평가
성과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	집행활동의 결과인 산출(output), 성과(performance)를 주기적으로 점검(진도점검)
균형성 분석	동일 프로그램(사업) 내에서 여러 단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단위사업간 균형적 추진 여부, 적시 추진 여부,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

답 ④

03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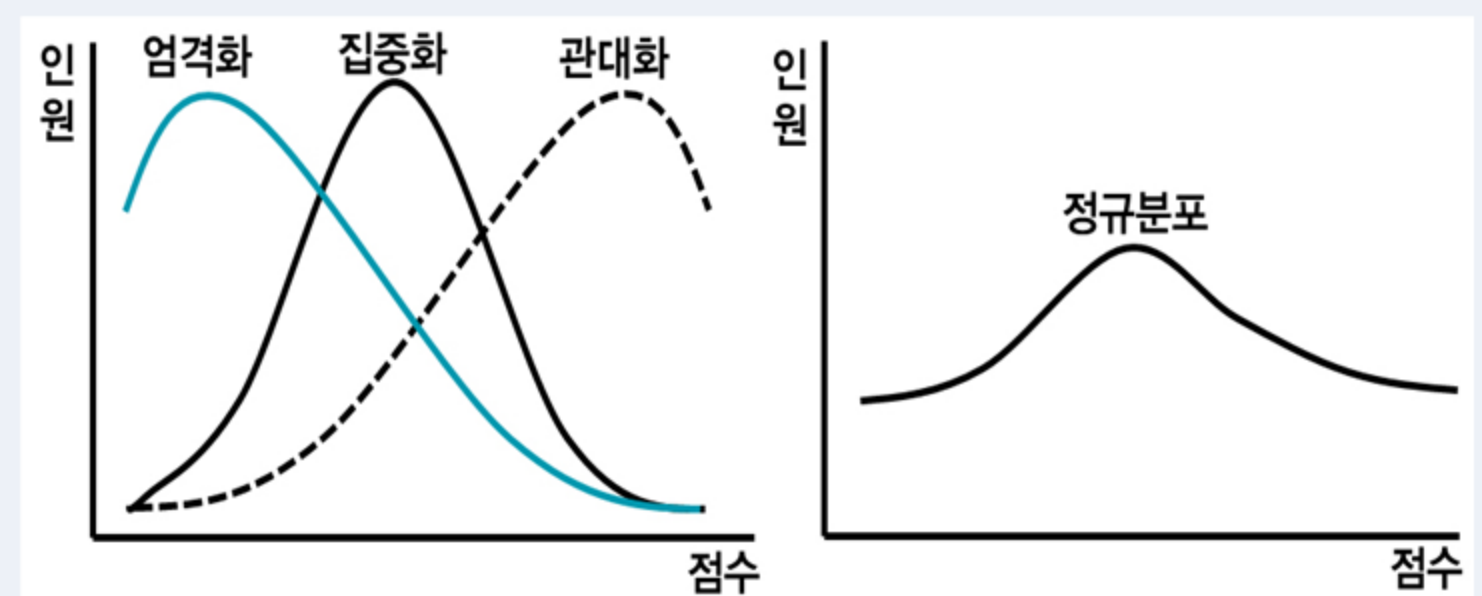
- ①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 ②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③ 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강제배분법은 분포의 오류(관대화·집중화·엄격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역산식 평정을 초래할 수 있음.

강제배분법[분포제한법, 강제할당법, 정규분포법](Forced Distribution)

- ① 의의 : 성적분포의 과도한 집중화·관대화·엄격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분포비율이 정규분포화 되도록 확실적으로 분포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방법. 도표식 평정을 보완.
- ② 장점 : 관대화·집중화·엄격화에 따르는 평정오차 방지.
- ③ 단점 : 평정대상 전원이 무능 또는 유능해도 일정 비율만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평정을 받게 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역산식(逆算式) 평정의 우려도 있음.
* 역산식 평정 : 평정자가 미리 강제배분비율을 고려해 피평정자를 연공서열에 따라 각 등급에 분포시킨 후 각 등급 해당 점수를 형식적으로 부여.



답 ①

04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 ②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④ 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해설

- ① (○) **정책네트워크모형** : 정책과정에 다양한 공식·비공식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모형
- ② (×)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 행위자 간 연계, 경계로 구성된다(Jordan & Schubert). 행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적 안정적인 행위자로 구성된다. 행위자 간 연계는 의사소통과 정보, 전문가, 신뢰, 다른 정책자원의 교환을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 주어진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적 제도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관련된 영역과 암묵적으로 구조에 포함된 상호 인지의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요 내용	인간의 사고체계와 행동적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경제학에서의 인간의 사고체계(두 가지 인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1(자동시스템) : 신속, 직관적 사고(휴리스틱), 현실 세계 인간(Human : 휴먼) ◦ 시스템 2(숙고시스템) : 신중, 의식적 사고(심사숙고), 합리적 인간(Econ : 이콘) • 불확실한 상황과 조건에서 휴리스틱(시스템 1)을 활용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받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중대한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행동적 시장실패' 																										
	넛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넛지 :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 요소. • 선택설계 : 선택할 대안이 정책 대상자에게 제시되는 방법과 이를 통해 판단,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 개인의 인지 오류를 이용한 선택설계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의지적 판단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선택설계로 구분됨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의 특성	<p>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개입 대상 :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바로잡는 '수단 개입주의' • 정부의 개입 수준(강도) : 물질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후생을 개선키는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 <p>② 간접적·유도적인 정부개입방식, 촉매적 정책수단 :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넛지 도구를 제시(예) 디폴트 옵션의 조정, 정보와 선택 대안의 단순화, 현저성(salience)과 주목(attention) 효과 제고, 사회적 규범 활용, 정보공개 및 시각정보를 활용한 경고, 기억의 환기, 과거 선택의 특성과 결과 제공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th> <th colspan="4">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th> </tr> <tr> <th>규제적 정책수단</th> <th>유인적 정책수단</th> <th colspan="4">촉매적 정책수단</th> </tr> </thead> <tbody> <tr> <td>선택의 제거 및 제약</td> <td>선택의 유도 및 촉진</td> <td colspan="4">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td> </tr> <tr> <td>명령과 금지, 통제</td> <td>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td> <td>정보제공(설득)</td> <td>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td> <td>물리적 환경의 변화</td> <td>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td> </tr> </tbody> </table> <p>③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이론적 토대인 행동경제학의 연구방법 자체가 각종 실험(실험실실험, 자연실험,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에 기초함. "정책실험 등의 테스트를 통해 개입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개입 수단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법론(test-learn-adapt)을 개발·활용"</p> <p>④ 급진적 점증주의(radical incrementalism) 관점(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많은 혁신적 변화가 사실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시각) : 정책 대상집단의 인지적 오류를 보완하여 대상집단의 자율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나 소규모 변화가 축적되면 기존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혁신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p>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넛지이론과 신공공관리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공공관리론</th> <th>넛지이론</th> </tr> </thead> <tbody> <tr> <td>이론의 학문적 토대</td> <td>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td> <td>행동경제학</td> </tr> <tr> <td>합리성</td> <td>완전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td> <td>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td> </tr> <tr> <td>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td> <td>신자유주의, 시장주의</td> <td>자유주의적 개입주의</td> </tr> <tr> <td>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td> <td>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td> <td>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td> </tr> <tr> <td>공무원상</td> <td>정치적 기업가</td> <td>선택설계자</td> </tr> <tr> <td>정부 정책의 목표</td> <td>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td> <td>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td> </tr> <tr> <td>정책 수단</td> <td>경제적 인센티브</td> <td>넛지</td> </tr> <tr> <td>정부개혁 모델</td> <td>기업가적 정부</td> <td>넛지 정부</td> </tr> </tbody> </table>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용 : 넛지를 통한 정책은 비강제적이고,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통적 수단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한계 : ① 넛지 정책의 효과는 단기기에 소멸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보장하지 못함. ② 넛지 정책은 기존의 정책 수단에 비해 사회적 혁신이라고 부를 만큼의 대규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기 곤란함. ③ 선택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행동적 정부실패'의 문제도 제기됨. 																											

06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
- ③ 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④ 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해설

③ (×) **일선관료의 대응 메커니즘(coping mechanisms)으로서의 고객의 유형화·범주화·선별(creaming)**

- ㉠ **고객의 유형화** : 각각의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예) 우호적 집단과 비우호적 집단).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특정 계층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음.
- ㉡ **고객의 재정** : 일선관료의 인지구조 속에 단순화시켜 놓은 인종, 성, 학력, 경제적 계급 등의 기준을 가지고 고객을 재정(범주화하여 선별) 한 후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문제 탓으로 책임을 회피.
- ㉢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 : 할당 배급, 제한된 대상에게만 정보 제공, 시간과 금전적 비용 지불 요구, 고객들로 하여금 굴욕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대가 지불 요구, 창구를 하나만 만들어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는 방식 등.

답 ③

07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 ②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들 수 있다.
- ③ 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 ④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해설

④ (×) 행정기능의 중복·혼란을 피하고 분열을 억제하는 것은 집권화의 장점.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①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시 ② 조직활동의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③ 하위조직간 의존도는 높는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때(갈등 조정) ④ 소규모 조직(구성원 수가 소수), 신설조직(조직의 역사가 짧을 때) ⑤ 재정자원의 규모 증대, 중요도가 높은 결정사항 ⑥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 증대 ⑦ 권위주의적 문화 ⑧ 규칙·절차의 합리성·효과성에 대한 신뢰 증가(공식성 증가) ⑨ 일의 전문화, 능력 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분업의 심화, 기능 분립적 구조설계(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⑩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단,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분권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⑪ 하급자·하급기관의 역량 부족	①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복잡성·동태성 증가(조직의 적응성 필요)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 촉진 ③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 ④ 조직의 쇄신과 개인적 창의성 발휘 ⑤ 조직참여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⑥ 조직 규모의 확대(대규모 조직-구성원 수 다수) ⑦ 구성원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 ⑧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 ⑨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

집권화의 장점	분권화의 장점
① 정책 수립·집행의 통일성, 업무의 전문화, 행정적 통제와 지도감독 용이 ② 대량의 업무 처리로 재원(비용) 절감 ③ 조직의 위기나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 가능 ④ 조직 내 부서 간의 업무조정 용이, 조직 내 갈등의 신속한 해결 ⑤ 행정기관·행정구역 간 재정 및 서비스 격차 시정 ⑥ 행정기능의 중복·혼란을 피하고 분열을 억제 ⑦ 조직의 목표성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용이 ⑧ 조직의 혁신·변화에 대한 요구의 수용 정도가 높음	① 대규모조직에서 효율성이 크며, 최고관리자의 업무를 감소시킴 ②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③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협조를 유도 ④ 부서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업무 수행 가능 ⑤ 조직 내 요원의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감 증진 ⑥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므로 중앙과 지방간 하위부서 간 횡적인 협조체계 구축 ⑦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 불확실한 환경에 잘 적응

답 ④

08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책임회피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 ㉡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 ㉢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 ㉣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 ㉠ (○) 만족모형은 대안의 탐색이 현실에 만족하는 정도에서 중단되므로 **현상유지적·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쇄신적·창조적 대안이나 최선의 대안 발굴이 포기될 수 있음.**
- ㉡ (×) 만족모형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발견되면 대안탐색을 중지한다고 하는데, 개인에 따라 만족수준이 다르므로 만족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음.
- ㉢ (×) 회사모형의 한계임. 회사모형은 조직 내의 수평적 하위조직들 간의 관계를 주로 취급하므로 조직의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음.
- ㉣ (○) 일상적 결정은 만족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결정은 합리적·분석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족모형 적용에 한계가 있음.

답 ②

09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② followership의 유형

		행동	
		수동적 [피동적]	적극적 [능동적]
사고 thinking	독립적·비판적 사고 (independent, critical)	소외형 (alienated followers / cynics)	모범형[효율적] (exemplary followers / stars)
	의존적·무비판적 사고 (dependent, uncritical)	수동형[피동형] (passive followers / sheep)	순응형 (conformist followers / yes people)

- 소외형 : 독립적·비판적 사고를 하지만 조직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수행을 하지 않음. 가장 파괴적이고 위험한 유형.
- 순응형 :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독립성이 부족해 리더의 권위에 복종하며 리더의 결정을 지나치게 따름.
- 수동형(피동형) :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직의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직무만족이나 직무수행능력이 가장 낮음.
- 모범형(효율적 추종자) :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의 유익한 자산이 되는 유형.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모험·갈등도 피하지 않음. 가장 바람직.
- 실무형(실용주의자) :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유형을 바꾸며 조직 내 자신의 생존·안정을 추구.

㉔ (×) 높은 구조주의(nitiating structure)와 높은 배려(consideration) 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으로 봄(양자가 모두 높을 때 추종자의 불평·이직률은 가장 낮고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봄).

- 구조설정(구조주의 ; initiating structure) : 구성원 간 관계의 규정, 구조화, 공식적 의사전달경로 설정, 집단의 과업달성방법 제시 등과 관련된 지도능력(= 업무중심)
- 배려(consideration) :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우호적 분위기, 정서적 공감을 조성하려는 지도행태(= 인간관계중심)

답 ③

11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의·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④ (×)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답 ④

☞ 예산과 법률

구 분	예 산	법 률
제출·제안권자	정부(행정부제출 예산제도)	국회 또는 정부
제출 및 심의 기한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심의	제한 없음
국회의 심의 범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효력발생요건 (공포)	국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 절차 필요 없음 행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공고	공포 필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형 식	예산의 형식	법률의 형식
시간적 효력	1회계연도에 한정된 한시적 효력	폐지 전까지는 계속적 효력
구속력(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효력범위(지역적 효력)	국내·국외	원칙적으로 국내(국외 - 특별한 경우)
변경·수정(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을 수정할 수 없음	법률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음

- 관계
- ① 양자의 관계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과 법률이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예산과 법률은 서로 형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성질과 효력을 달리함.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 ② 상호구속성
 - ㉠ 세출예산이 성립해 있더라도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음.
 - ㉡ 법률이 지출을 명하더라도 지출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음.
 - ㉢ 국회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세입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음.
 - ③ 재정소요 추계 : 재정이 소요되는 법령안 제·개정시 법령안 시행일부터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해야 함.

12 행정 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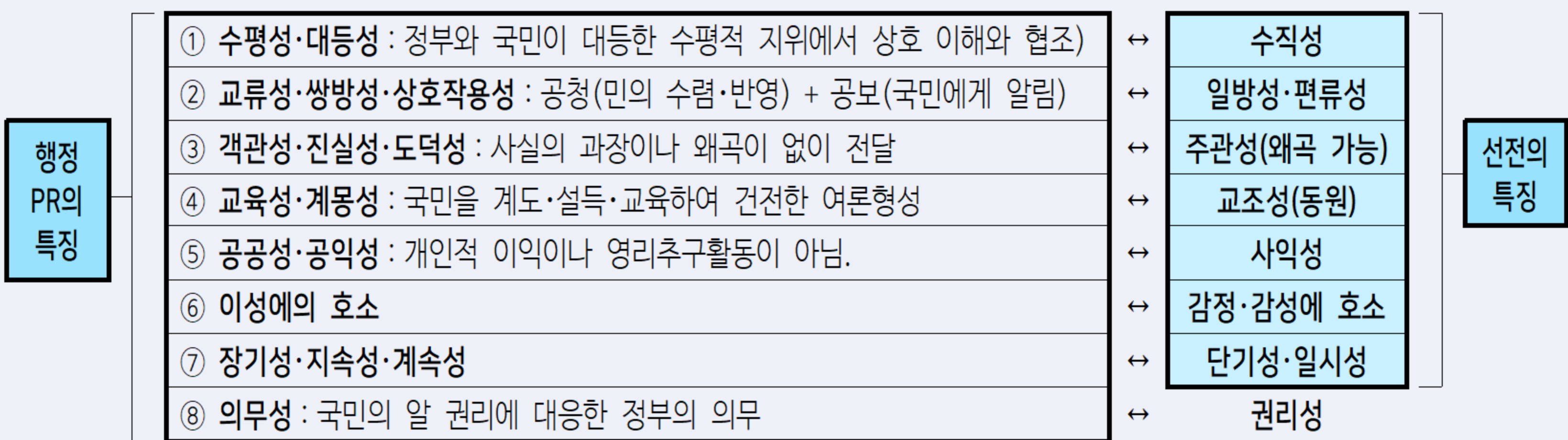
- ①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②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 ③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 ④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

해설

④ (×) 행정 PR(Public Relation[공공관계] 또는 Public Information(대민홍보)은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투입적 행정 PR : 공청)하고, 조직의 정책·사업에 대한 공중의 이해·협력·신뢰를 확보하여 이를 유지·증진(산출적 행정PR : 공보)시키기 위한 계획적 활동이다. 행정PR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응한 정부의 의무이지만 정부와 국민 간 공청(민의 수렴·반영)과 공보(국민에게 알림)기능을 포함한 교류성·쌍방향성·상호작용성을 지닌다.

■ 행정 PR과 선전(propaganda)의 구별

구분	목적	방법	성질	요구주체	대상	시간	공통점
행정PR	주체와 객체 쌍방의 이익 증진 상호 간에 협력을 이루는 과정	사실의 전달 (합리적 이성애 호소)	수평성·상호교류성· 객관성·의무성	정부·지방 자치단체	국민 (공중)	장기적 원시적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을 얻기 위한 기술의 활용
선전	선전주체의 일방적 이익 추구 선전객체의 일방적 추종 확보	과장·은폐·왜곡 (격정적 정서에 호소)	수직성·일방성	기업	소비자	단기적 근시적	



답 ④

13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 ③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해설

①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 파면의 경우 연금급여가 감액 지급됨.

■ 해임과 파면의 효과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공직취임 제한
해임	원칙 : 영향 없음	원칙 : 영향 없음	3년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1/4 감액 지급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1/8 감액 지급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시 1/4 감액 지급	
파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1/2 감액 지급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1/4 감액 지급	1/2 감액 지급	5년간

③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감봉의 경우 보수 감액만 있고, 직무수행을 못하는 것은 아님.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감봉·정직·강등 구별

구분	보수 및 직무 종사		승진임용·승급 제한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함 직무에 종사 가능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2개월 간
정직	1~3개월	보수 전액 감함 직무에 종사 못함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8개월 간
강등	3개월		

답 ①

④ (○) 정책결정자만 주요 행위자로 보므로 일선 집행관료들의 능력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반대세력의 전략과 입장 등 집행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 정책집행의 하향적(전방향적) 접근방법

의의	① 정책집행의 실패를 막고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로 바람직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정책 중심, 정책결정자 관점). ②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단적 행위로 인식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며 단계를 중시하는 '단계주의 접근'.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해 바람직한 집행은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봄
특징	① 정치·행정2원론과 합리모형에 근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여 파악하며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을 배경으로 함. ② 정책결정자의 관점: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의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고전적 접근방법.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은 성공적 집행의 핵심조건이며 집행자의 재량은 인정하지 않음. 결정자의 통제력과 집행자의 순응을 성공요건으로 봄. ③ 규범적 처방의 제시: 집행과정에 대한 기술(記述)이나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 ④ 집행의 비정치성: 일선관료는 단순히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집행만 하므로 집행의 비정치적·기술적 측면 강조. ⑤ 거시적·연역적 접근: 행위자보다는 모든 구조적 변수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이며, 집행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립한 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
장점	①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밝혔으며 집행과정에서 법적 구조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② 효과적인 집행조건은 정책결정자에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측하는 점검목록(checklist)이 됨. ③ 집행결과를 법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해 평가하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 가능. ④ 비교적 소수의 집행영향변수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총체적 정책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장기적 시계(10년 정도)를 갖도록 해주므로 정책지향적 학습과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줌.
단점	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설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많음. ② 정책결정자만 주요 행위자로 보므로 일선 집행관료들의 능력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반대세력의 전략과 입장 등 집행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큼(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함) ③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지만, 실제 집행현장은 여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집행되며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④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집행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정책결정의 내용은 영향을 받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측하여 법령에 그 대안을 미리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답 ③

17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 ㉣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구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33조 2항(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로 정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상 근거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최소단위 최소단위별 복수노조 가능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 1기관 1협의회(1기관 복수협의회 불가)
	전국단위 노조, 노조연합체 가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상),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부 협의회들을 대표하는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설립절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설립 사실 통보

㉡ (○)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음.

㉔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소청인인 공무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소청인인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일부인용재결이나 기각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㉕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답 ③

18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 ②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 ③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 ④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① (×) 국가채무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제외.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② (○)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③ (○) •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

- ㉠ 적자성 채무 :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향후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
- ㉡ 금융성 채무 :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자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답 ①

19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③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 공직자등이 보유한 일정 총가액 이상의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 매각이나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을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백지신탁계약체결시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 ④

20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해설

- ②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가 소유한 재산은 제외
 ③ (×) 3개월 ⇨ 2개월
 ④ (×)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제4조(등록대상재산)

-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답 ①

2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해설

- ③ (×)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

• 지방자치법

-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답 ③

22 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① (○)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 정부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

② (○) **IMF 「재정투명성 규약」의 일반원칙**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clari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② 예산과정의 공개(open budget processes) ③ 정보의 공공이용성(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④ 재정정보의 신뢰성[완전성] 보장(assurances of integrity)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정보고(Fiscal Reporting) ② 재정전망과 예산편성(Fiscal Forecasting and Budgeting) ③ 재정위험분석과 관리(Fiscal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④ 자원수입관리(Resource Revenue Management)

③ (×)

•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

•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답 ③

23 정부신뢰 및 시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이다.
- ㉡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 ㉢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사례이다.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 **정부신뢰** :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이 시민들 자신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를 정책활동에 반영하려는 의향과 반영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 국민의 기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도덕성(윤리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과 성과, 정책과정의 대응성, 정책적용의 형평성, 정책절차상 공평성, 서비스 전달 관료의 행동양식 등을 구성요소로 함.
- ㉡ (×) 신탁적 신뢰는 정부와 시민 간 비대칭적 관계(정보비대칭성, 통제곤란성)에서 형성됨.

■ **정부신뢰의 유형(Thomas)**

-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 : 일반 시민들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부와 국민 간에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수반되지만, 이에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과 공공선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정부가 윤리적,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 차원.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이며 주인은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을 무한정, 전폭적으로 믿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뢰임. 이 경우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행정기관 자체-시민, 고위(상층)관료-시민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성(시민의 행정측에 대한 정보 부족), (시민의 행정측에 대한) 통제의 곤란성 때문에 발생.
- 상호적 신뢰(mutual trust)** :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행위자 사이에서 생성되는 신뢰. 지속적인 교환과 대면접촉으로 형성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적 관계성이 핵심요인이며,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부의 쌍방향 대칭적이고 대인적 상호작용 관계가 선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함
-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 신탁적 신뢰와 상호적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부와 시민 간 제도화된 상호작용성이 공공선을 증진하는 사회 구성 원리로 확립되고 작동되는 시스템

- ㉢ (○)
 - **숙의(熟議)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심의(深議)민주주의)** :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참여적인 민주주의.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집단적 결정과정이 정당화됨.
 - **숙의적(deliberative ; 熟議的) 합의 형성 방법** : 참여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 형성 방식. 가치갈등 사안이나 갈등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됨. 다만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결정에 활용되기 어렵고, 진지한 토론과 성숙한 합의 문화가 전제되어야 함. 사례로는 **공론조사**,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
 - **공론조사** :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발,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한 다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표면적인 의견이 아니라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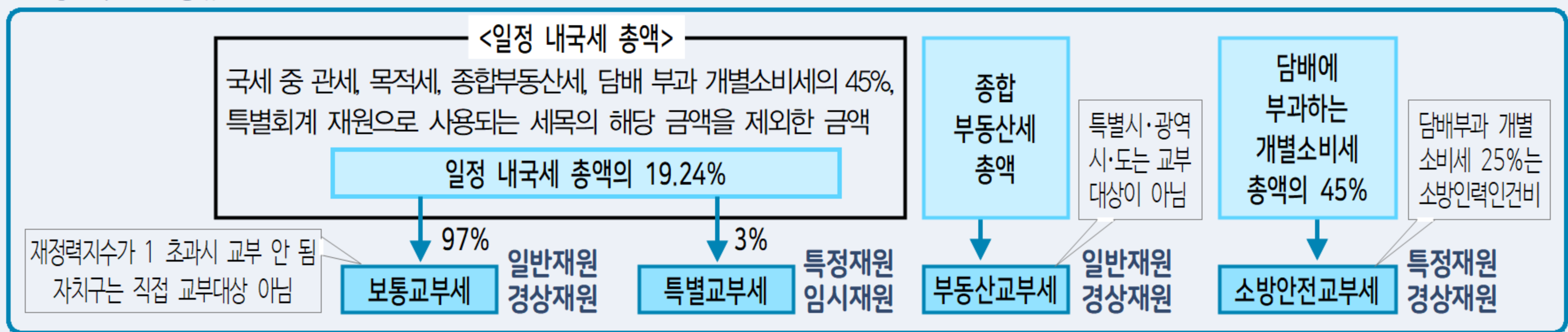
2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②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 ①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나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며,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에 따르고 국가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임.

• **지방교부세의 종류**



- 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
	일정 내국세 총액의 20.79% :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79	일정 교육세 세입액 중 3% :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

- ③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5년, 노무현 정부)**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년) → 지역발전특별회계(201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9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23년)**
- ④ (×)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저리의 지방채 인수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 도입.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답 ④

25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ICT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 ① 혼합현실(mixed reality)
- ②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③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④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해설

- ① **혼합 현실(MR : mixed reality, 융합현실)·혼성 현실(hybrid reality)** : 가상 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이 혼합된 기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 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 특히,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②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처리절차재설계)** : 비용·품질·서비스·속도 등 조직의 핵심적 성과요인의 획기적인(Dramatic) 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Process)를 근본적으로(Fundamental) 검토하여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수요자(고객) 위주로 기본에서부터 혁신적으로(Radical) 재설계하는 기법. 정보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지원하며 정보는 처음 발생할 때 한 번만 처리하고 전 과정을 통해 그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
- ③ **정보자원**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
정보자원관리(IRM ; Infomation Resource Management) : 정부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조직이 보유한 정보자원 활용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만족 및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적 책임을 지는 자를 CIO라 함
- ④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빅데이터 및 분석 기술을 토대로 한 IT 산업의 차세대 플랫폼. 온라인 컴퓨팅의 '클라우드'와 스마트폰, 기계 및 가전 제품과 같은 무선으로 연결된 장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장치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함.(제1의 플랫폼은 컴퓨팅 기기 자체를 가리키는 메인프레임(Mainframe)과 터미널이며, 제2의 플랫폼은 LAN, 인터넷 환경 등의 PC를 뜻함.)

답 ②